『뉴질랜드 방재계획제도 및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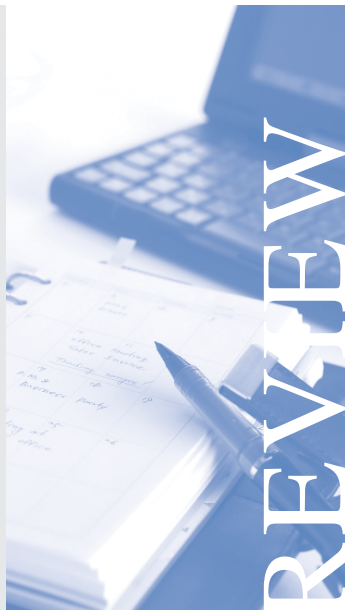

김 경 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주임연구원
뉴질랜드 지질원자력연구소(GNS)
자연재해연구소 교환연구원

1. 머리말

뉴질랜드는 지구상에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재해 다발국이며, 동시에 짧은 역사기간동안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명실상부한 방재선진국이다. 우리나라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정하여 소방방재청을 설립한지도 무려 8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시점에서, 비슷한 시기인 2002년 민방위비상관리법을 재정하고 관련조직을 재정비한 뉴질랜드의 방재정책 운영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방재정책 운영의 현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방재선진국의 운영 노하우를 바로 차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뉴질랜드 정부의 방재정책 운영상황을 제도와 조직에 초점을 두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간략히 뉴질랜드의 자연재해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본론으로 나아가서는 2002년에 재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민방위비상관리법의 체계와 이 법을 시행하는 중앙정부 내의 민방위비상관리부 및 지방 하부조직인 민방위비상관리그룹의 구성과 역할 및 운영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뉴질랜드 자연재해 특성

뉴질랜드는 지질학적으로는 서쪽으로 호주판, 동쪽으로 태평양판이 만나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두 판은 약 40mm/yr의 속도로 충돌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지대는 섭입대(攝入帶 ; subduction zone)로서, 알파인 단층선(Alpine Fault)을 비롯한 여러 지진단층(Earthquake Fault)을 형성하고 있다. 그 결과 뉴질랜드는 지진, 쓰나미, 화산 등 지질학적 재해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은데, 특히 발생예측이 거

의 불가능한 지진의 경우, 뉴질랜드 전 지역을 걸쳐 매년 10,000에서 15,000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지진 중 약 150건은 사림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지진이고, 그 중 약 20건 정도는 발생위치에 따라서 치명적인 재난이 될 수 있다. 또한 4면이 바다인 뉴질랜드의 해안지역은 언제라도 쓰나미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 타라웨라(Tarawera) 화산폭발 등 뉴질랜드의 화산재해도 역사적으로 큰 재난을 일으켜 왔으며, 특히 타우포 화산지대(Taupo Volcanic Zone)를 중심으로, 언제라도 화산활동과 관련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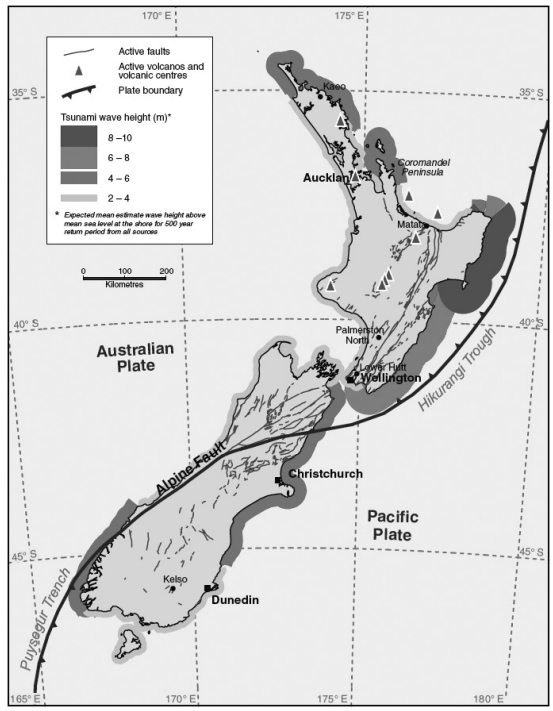

그림 1. 뉴질랜드의 활단층, 활화산 및 쓰나미 위험지대
출처 : Terralink International Limited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는 남태평양의 중앙에 위치한 이유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아 폭우, 강풍, 홍수 등 발생이 빈번하며, 엘니뇨-남방진동(ENSO ; El Nino-Southern Oscillation) 및 태평양진동(IPO ; Interdecadal Pacific Oscillation) 등 주기적 기후현상,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수문기상학적 재해의 발생빈도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원시림을 잃어버린 곳으로서, 전 국토의 85%가 원시림으로 덮여있던 뉴질랜드는 유럽인의 정착 후 경작 및 목축 등 개간행위로 불과 2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전체 원시림의 70%가 사라져, 토양침식, 산사태 및 홍수에도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자주 겪는 수문기상학적 재해뿐만 우리가 쉽게 겪지 못하는 지질학적 재해까지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임을 간략히 설명하였는데, 다음 장에서는 본론으로서 이러한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한 방재계획제도와 조직의 운영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방재계획제도 체계

뉴질랜드는 방재와 관련하여 소방법, 삼림 및 농촌 소방법, 환경법, 자원관리법, 고용안전보건법, 지진피해보상법, 차단방역법, 해상운송법,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 관련법, 지방자치법,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와 관련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법률 등 중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은 민방위비상관리법이다. 민방위비상관리법은 뉴질랜드 재해대비 및 대응의 기본법이 되며 이를 토대로 국가전략이 수립되고, 그 전략을 토대로 국가 민방위비상관리계획 및 각 지방정부 별 그룹계획이 수립된다. 이러한 단계별 제도는 각 단계별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실행되는데, 다음의 그림은 이러한 상호관계의 흐름을 계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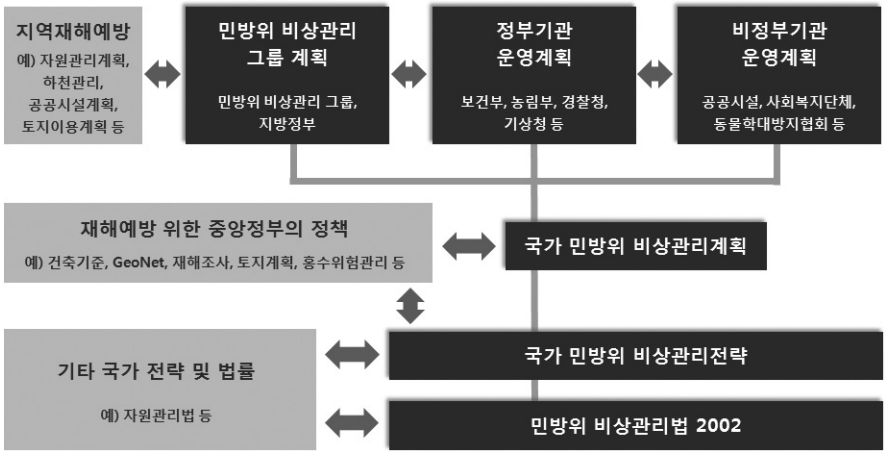

그림 2. 민방위 비상관리 기본체계
자료 : NCDEM Strategy

3.1 민방위비상관리법

민방위비상관리법(Civil Defence Emergency Management ACT 2002 ; CDEM Act 2002)은 1983년 제정된 민방위법(Civil Defence Act 1983)이 폐지되고, 이 법을 대체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목적은 뉴질랜드 사회가 재해에 대처할만한 장기 · 지속가능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재해대비 및 재난관리에 필요한 국가전략, 계획,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정하는 뉴질랜드 방재관련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표 1. 민방위 비상관리법의 주요 골자

구 분	주 요 골 자	조 문
예비조항	• 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등	3조~7조
민방위 비상관리 임원 및 그룹	• 임원 및 총괄관리자의 임명, 임무, 권한 등 • 민방위 비상관리그룹회원의 권한, 의무 및 임무 • 지방정부의 민방위 비상관리그룹 창설 등	8조~30조
민방위 비상관리계획 및 관련기관 의무	• 국가 민방위 비상관리전략 수립 등 • 민방위 비상관리그룹계획 수립 등 • 정부 부처 및 타 부서의 의무 등	31조~65조
비상사태 공표	• 국가 비상사태 및 지역 비상사태 공표 절차, 기간 등	66조~73조
관련 권한	• 법 집행 관련 권한행사에 관한 내용	74조~94조
위반행위 및 처벌	• 법 위반행위 및 그에 대한 처벌 및 소송절차 등	95조~104조
기타조항	• 위임권한 등 기타내용	105조~120조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민방위비상관리부 내에 민방위비상관리 업무를 책임질 임원 및 총괄관리자와 중앙조직, 그리고 각 지역의 비상관리업무를 책임질 민방위비상관리그룹의 조직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적 수준의 전략과 계획, 지역적 수준의 그룹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적인 민방위비상관리의 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비상사태 공표절차 및 권한행사와 위반행위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2 국가 민방위비상관리전략

국가 민방위비상관리전략(National Civil Defence Emergency Management Strategy ; NCDEM Strategy)은 민방위비상관리의 통합적 접근방법, 비전, 4대 목표 등 실행적인 측면보다는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전략에서는 통합적 접근방법을 알파벳 R로 시작하는 4개의 용어를 통해 슬로건화 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시된 4R은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뼈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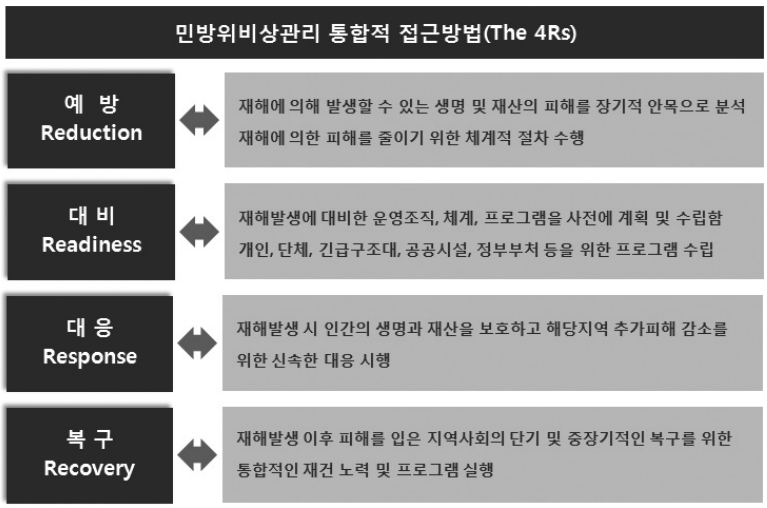

그림 3. 민방위비상관리 통합적 접근방법(The 4Rs)
자료 : NCDEM Strategy

국가 민방위비상관리전략의 비전은 법과 전략 및 계획 등을 통틀어 관련 정책시행의 가장 상위목표를 개념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재해(hazards)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뉴질랜드 실현' 으로서, 뉴질랜드 사회로 하여금 직면할 수 있는 재해(hazards)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관련정책 및 참여를 통해 재해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뉴질랜드 사회를 유지하자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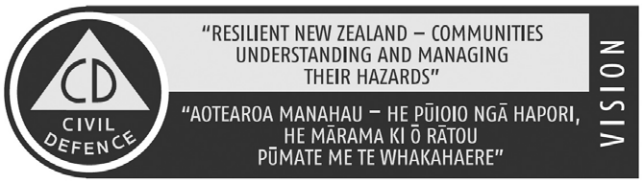

그림 4. 국가 민방위 비상관리전략의 비전
출처 : National CDEM Strategy 2007

그리고 이러한 국가 민방위비상관리전략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세워진 5대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원칙 1 : 개인은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가진다.
- 원칙 2 : 재해위험 관리에 있어 투명하고 조직적인 절차를 거친다.
- 원칙 3 :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재해위험의 관리를 실현한다.
- 원칙 4 : 재해피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원칙 5 : 관련 전문가, 조직 및 각종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에서도 제시되었으며, 민방위비상관리계획 및 그룹계획에서 더욱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3.3 국가 민방위비상관리계획

국가 민방위비상관리계획(National Civil Defence Emergency Management Plan : NCDEM Plan)은 민방위비상관리법의 제3부 39조~45조의 민방위 비상관리계획 및 관련기관 의무' 에 의해 국가 민방위비상관리전략의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정의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민방위비상관리계획은 민방위비상관리법의 하위법인 명령(命令;order)의 형태로 2005년에 제정되었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 민방위비상관리계획의 목적은 재해 및 위험을 국가적 수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재해 및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하는데 있는데, 재해 발생 전 · 후에 대비한 각 기관들의 역할부터, 예방(Reduction), 대비(Readi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의 4R에 대한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표 2. 국가 민방위 비상관리계획영의 주요 골자

구 분	주 요 골 자	조 문
예비조항	• 용어정의 및 계획의 지위 등	1조~3조
계획 목적, 목표 및 범위	• 계획의 목적 및 목표 • 국가 민방위비상관리 전략에 대한 목표 관계 • 계획의 범위 및 역량	4조~8조
재해 및 위험	• 국가적 수준의 관리가 요구되는 재해 및 위험	9조
국가 비상사태관리 관련 법적 기준	• 장관의 권한 • 정부 위기관리 조정사항 • 민방위비상관리 임원의 역할	10조~16조

기관들의 역할 및 책임	• 민방위비상관리그룹의 역할 및 책임 • 일반 긴급구조대, 경찰, 소방대, 의료기관, 공공시설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17조~39조
복지	•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복지와 관련된 기관의 역할	40조~50조
대비	•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 훈련, 시행, 및 대비	50조~58조
대응	• 비상사태 발생 시 경보체계 •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역할 • 비상사태정보관리 및 공보관리 • 집단대피 및 국제지원	59조~83조
복구	• 비상사태에 대한 복구 이행 및 절차	84조~87조
정부 재정 지원	• 민방위비상사태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원칙	88조~89조

3.4 민방위비상관리 그룹계획

민방위비상관리법은 뉴질랜드의 모든 도의회 및 지자체로 하여금 민방위비상관리 그룹을 창설하고, 또한 그에 따른 민방위비상관리 그룹계획(Civil Defence Emergency Management Group Plan ; CDEM Group Plan)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그룹계획에는 각 지역에 적합한 전략과 실천방안을 담아야 하는데, 이는 각 지역에 걸맞은 선택적인 접근을 추구함으로서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각 그룹계획은 현행 국가 민방위비상관리전략에 부합하여야 하며, 민방위비상관리부가 공표한 지침, 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각 그룹계획은 그룹이 속한 지역의 자연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하는데, 각 지역에 비상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 즉 어떠한 자연재해가 그 지역에 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각 재해에 따른 대처방안도 지역 환경에 맞게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룹계획은 그 그룹의 사회적 특성도 반영하여야 하는데, 그룹에 속한 각 지자체의 지역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룹이 효율적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뉴질랜드의 방재관련 조직 및 역할

4.1 내무부

뉴질랜드의 정부부처는 그 기능 및 역할에 따라 크게 중앙관리기구, 정책권고 및 집행부처, 조세관련부처 등 4개의 군으로 나눌 수 있다. 민방위비상관리부가 속한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정책권고 및 집행부처(Mix of Policy and Delivery)에 속한 11개 부처 중 하나로서, 뉴질랜드가 1840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설립된 식민장관실(Colonial Secretary' s Office)을 모태로 하는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지 가장 오래된 정부기관 중 하나이다. 내무부는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존경받는 국가건설을 위해 국민, 지역사회 및 정부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조직의 비전에 걸맞게 뉴질랜드 정부기관 중 가장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기관이며, 그 조직구성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크게 6개의 분야로 나뉘는데, 거기에 뉴질랜드의 방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민방위비상관리부가 포

함된다. 뉴질랜드 내무부의 분과별 조직도와 민방위비상관리부의 위치는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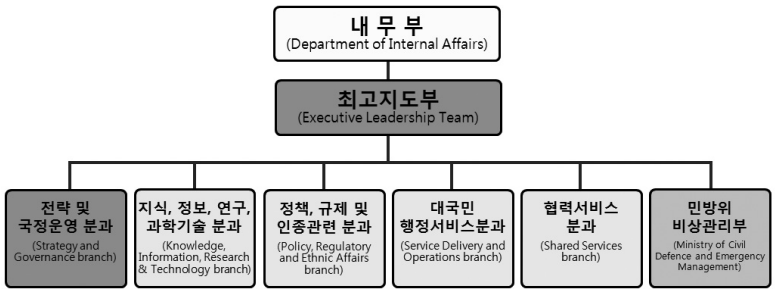

그림 5. 내무부(DIA)의 분과별 조직도

4.2 민방위비상관리부

민방위비상관리부(Ministry of Civil Defence and Emergency Management ; MCDEM)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재난사태 발생에 대비하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여러 관련기관들이 수행해야하는 사항을 관리 · 조정하는 내부무의 소속기관이다. 1999년 설립되었으며, 기관의 목적은 국민 및 지역사회로 하여금 재해발생에 대한 대비, 대응 및 복구능력을 향상시켜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에 있다. 이러한 민방위비상관리부의 핵심역할과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다.

- 뉴질랜드 사회가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및 사회적 피해에서 속히 회복 할 수 있도록 전략 및 정책을 수립 · 시행
- 관련기관 및 시설이 재해발생에 대한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
-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위한 계획이 지역 및 전국가적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수립되도록 관리하고 지원
-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및 복구 활동 직접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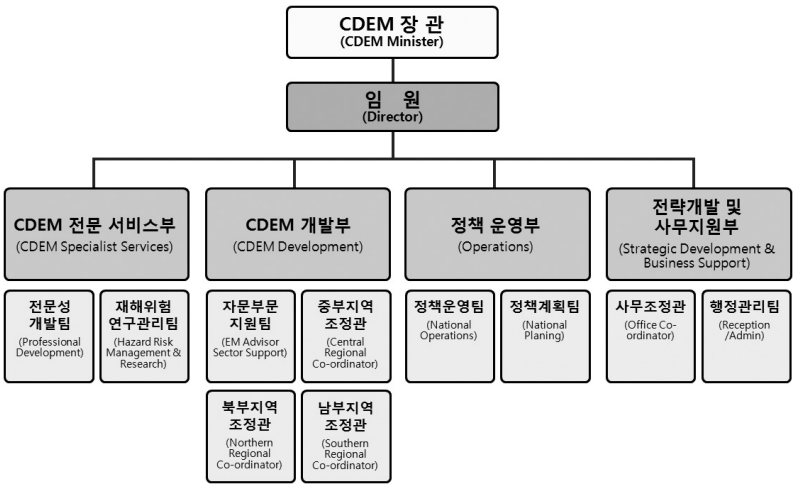

그림 6. 민방위비상관리부(MCDEM) 조직체계

임원(Director)은 공공부문법(State Sector Act 1988)에 따라 내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되며, 실질적인 민방위 비상관리부 최고 책임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임원에게는 민방위 비상관리 관련 사안에 대해 장관에게 자문제공, 국가재난사태로 판단되는 재해에 대한 확인 및 결정, 국가 민방위비상관리 전략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국가 민방위비상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임무가 부여된다. 임원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비상관리그룹, 긴급구조대 및 뉴질랜드 방위군에서 제공하는 인력, 자료, 정보서비스 및 기타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민방위 비상관리그룹의 의무 및 권한 이행을 통제할 수 있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CDEM 전문서비스(Specialist Development)부는 크게 전문성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팀과 재해위험연구관리(Hazard Risk Management & Research)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성개발팀은 해당부서 고위직에서부터 현장 자원봉사자까지 관련분야 이해당사자들의 업무능력 증진 및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만들어진 팀으로, 교재제작 및 각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의 활동을 기획하고 시행한다. 재해위험연구관리팀은 학계, 연구기관 등 정부자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연구결과물 및 실시간 현장 측정자료 등을 관리함으로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재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팀이다. 이 팀과 관련하여 정부자금을 지원받고 재해관련 연구 및 계측활동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는 지질 · 원자력연구소(GNS), 수자원 · 대기연구소(NIWA), 토지환경연구소 (Landcare Research) 등이 있으며, 학계 연구기관으로는 메시대학교(Massey Univ.)와 GNS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합동재해연구센터(Joint Centre for Disaster Research), 와이카토대학교(Univ. of Waikato)에 위치한 지구변화연구소(International Global Change Institute), 캔터베리대학교(Univ. of Canterbury)의 자연재해연구센터(Natural Hazards Research Centre), 빅토리아대학교(Victoria Univ. of Wellington)의 지진재해센터(Earthquake Hazard Centre) 등이 있다.

CDEM 개발부(CDEM Development)는 관련분야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행동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행함으로서, 국가수준, 지역수준 및 지자체수준 등 모든 단계에서 민방위비상관리에 관한 적절한 행정수행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부서이다. 조직구성은 부서를 총괄하는 자문부문지원팀(EM Advisor Sector Support)과 중부지역(Central Regional), 북부지역(Northern Regional) 및 남부지역(Southern Regional)을 관리 · 지도하는 세 개의 지역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역팀들은 비상사태 발생 시 각 지역에 속한 CDEM 그룹에 직접적인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정책운영부(Operations)는 실질적인 활동시행부서로서 정책운영팀(National Operations)과 정책계획팀(National Planing)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팀은 국가위기관리센터(National Crisis Management Centre ; NCMC) 및 국가경보시스템(National Warning System)의 운영과 국가시행프로그램(National Exercise Programme) 및 국가 민방위비상관리계획(NCDEM Plan) 수립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개발 및 사무지원부(Strategic Development & Business Support)는 사무조정팀(Office Co-ordinator)과 행정관리팀(Reception/Admin)으로 구성되었는데, 민방위비상관리부의 전체적인 행정업무와 정보교류 및 통신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3 민방위비상관리그룹 및 기타 참여기관

현재 뉴질랜드의 지방정부는 11개의 도의회(Regional Council)와 67개의 지자체(Territorial Authority)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지리적 위치, 재해환경 여건 등을 기준으로 16개의 민방위비상관리그룹(Civil Defence and Emergency Management Group ; CDEM Group)으로 통합 · 창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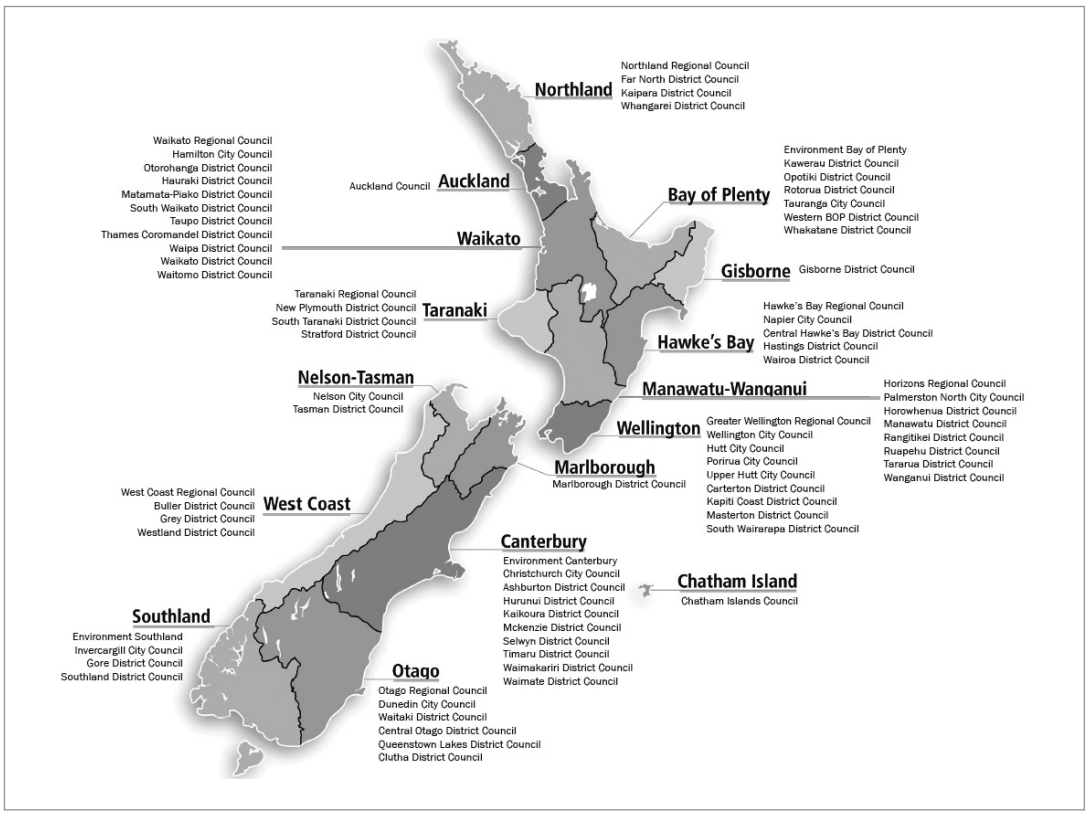

그림 7. 민방위비상관리그룹 및 각 그룹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출처 : MCDEM

민방위비상관리그룹은 해당지역의 지방정부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이 위원회에 의해 각 그룹은 그룹의 속한 지방정부의 기관장, 고위경찰간부, 소방서의 선임직원, 지역 내 의료 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된 민방위비상관리 조직경영그룹(Co-ordinating Executive Group ; CEG)을 조직한다. 이 조직경영그룹은 각 그룹의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계획의 이행, 전개, 유지, 검토 및 평가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룹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룹 내 지자체마다 비상관리사무소(Emergency Management Office ; EMO)가 설치되며, 그룹 내 가장 선임 지자체에 그룹 비상관리사무소(Group EMO)가 설치되는데, 그룹 비상관리사무소는 그룹

의 계획을 모니터링, 평가 및 검토하고, 그룹 내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에 활동하는 긴급대책본부(Emergency Operations Centre ; EOC)에 시설, 인력 등을 포함한 자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각 그룹 내 하위 단계인 지역 비상관리사무소(Local EMO)는 그룹계획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며, 지역의 비상관리기관, 타 지역의 기관,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와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지역 내 민방위비상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다.
아래 그림은 그룹 내에서 방재활동의 업무흐름체계를 그룹계획에 수립된 내용, 그룹 내 조직 및 참여기관과의 관계를 통해 간략히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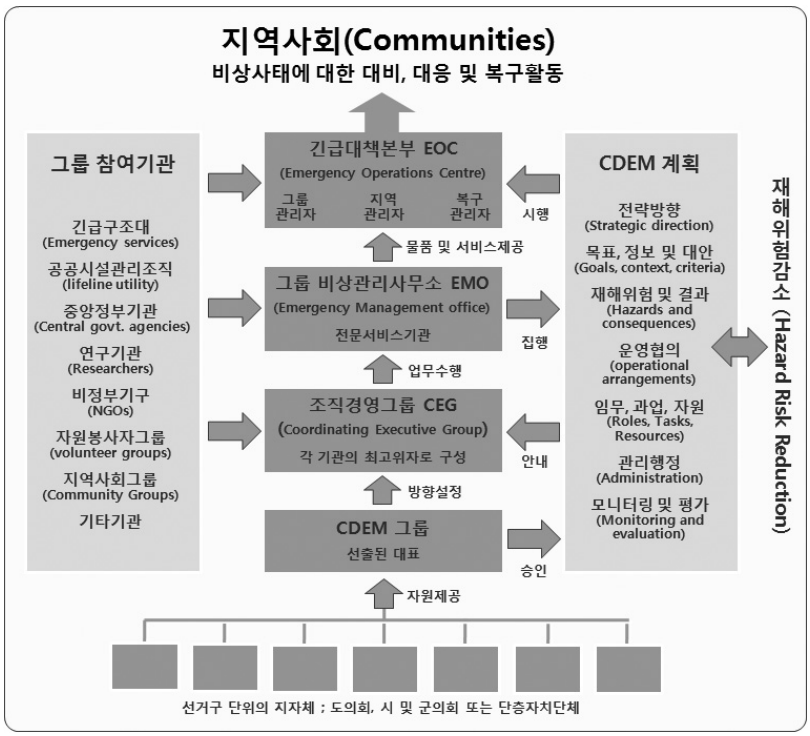

그림 8. CDEM 그룹 조직 및 업무 흐름체계
자료 : MCDEM Plan

그룹의 방재활동에는 지역 내 위치한 긴급구조기관(Emergency Services), 공공시설관리조직(Lifeline Utilities), 연구기관, 비정부기관, 자원봉사 및 클러스터(clusters) 등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경찰, 소방대 및 지역보건부는 3대 긴급구조기관으로 분류되는데, 경찰은 비상사태 시 기본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방위비상관리부, 기상청(MetService), 쓰나미경보센터(Pacific Tsunami Warning Centre) 및 기타 경보기관에서 보내는 재해 경보메시지를 전파하고, 비상대피지역 관리 및 비상경계선 유지, 비상사태 발생 지역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광범위한 임무를 맡고 있

다. 소방서는 비상사태 발생 시 기본적인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과 관련한 임무 외에도 비상급수, 유해물질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보건부(District Health Boards)도 기본적인 의료 활동 의외에 개인병원들을 포함한 지역 의료조직 간의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참여그룹으로 공공시설관리조직(Lifeline Utilities)을 들 수 있는데, 공공시설(Lifeline)은 뉴질랜드 지역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및 교통시설 등 필수시설이 포함되며, 이러한 필수시설을 관리하는 조직을 공공시설관리조직(Lifeline Utilities)이라 한다. 공공시설관리조직은 자연재해의 피해로 부터 뉴질랜드 국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이다. 다음 그림은 그러한 역할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공시설관리조직의 명령체계가 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비상관리부가 운영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National Crisis Management Centre) 및 각 민방위비상관리 그룹의 긴급운영센터(EOC)로 이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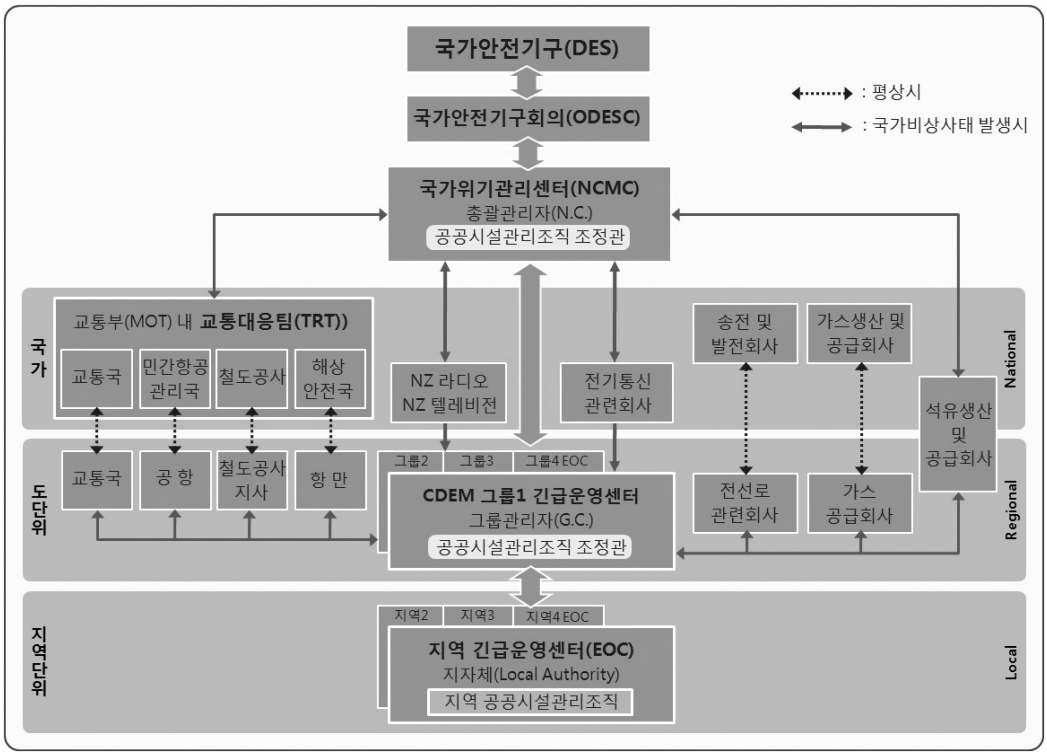

그림 9. 공공시설관리조직 역할조정 및 명령체계
자료 : National CDEM Plan

5. 맺음말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방재계획제도와 조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 내용을 통해 뉴질랜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간결하고 수직적 명령체계와 함께 지방그룹 내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수립 및 활동을 가능케 하는 수평적 활동체계가 잘 조화된 방재제도 및 조직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방재관련 업무는 민방위비상관리법이 중심이 되고 민방위비상관리부의 민방위비상관리계획과 각 지역그룹의 그룹계획에서 세부시행이 이루어지는 3단계의 제도체계 및 2단계의 조직체계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관련 권한과 책임 및 역할을 민방위비상관리부와 민방위비상관리그룹을 중심으로 다른 관련기관들과 분명하게 구분하여, 비상사태 발생 전 대비, 발생 후 대응 및 복구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수직적인 효율성과 함께 각 지자체는 스스로 지역그룹을 통합 · 창설하고, 창설된 그룹은 그들의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으며, 또한 그룹 내 여러 조직이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비상사태 발생 시 그룹 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참고문헌

• New Zealand Government, Civil Defence Emergency Management ACT 2002
• New Zealand Government, National Civil Defence Emergency Management Plan Order 2005
• MCDEM(2007), National Civil Defence Emergency Management Strategy
• MCDEM(2007), The Guide to the National Civil Defence Emergency Management Plan